

2010년 8월 28일 시행

# 제28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문제

문제책형	시험과목	헌법(40문), 민법(40문), 형법(40문)
①		

## 응시자 준수사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10. 8. 30.(월) 12:00 이후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시험자료실]에 게시
  2. 이의제기  
기 간 : 2010. 8. 30.(월) 12:00 ~ 2010. 9. 1.(수) 17:00  
방 법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질의응답/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10. 9. 10.(금) 12:00 이후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시험자료실]에 게시
-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 【 헌법 40문 】

【문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を負担한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상 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②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③ 교육감이 법률의 규정에서 정하여진 직무상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의무 위반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④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⑤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에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더라도 이것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문 2】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서술 중 옳지 아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언론매체의 표현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당해 표현행위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 ③ 엄격한 의미의 음란표현, 즉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음란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국민의 주권행사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나,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행하여지지 않을 수 없다.
- ⑤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 또는 전과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므로,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태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과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문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 ② 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 ③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 ④ 국회법에 관한 사항
- 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문 4】 ‘환경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②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 ③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로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된다.
- ④ 국가는 사인의 제3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에서 화성장치 사용 등에 따른 소음제한기준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련 법익을 형량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환경권을 과소하게 보호하고 있고, 이는 청구인이 누려야 할 정당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
- ⑤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사업장 등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 등에 의하여 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문 5】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서술 중 옳지 아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은 게임이용자로부터 게임 결과물을 매수하여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이윤을 붙여 되파는 영업으로서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에 해당한다.
- ②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행복추구권과 직업의 자유는 특별관계에 있고, 기본권의 내용상 특별성을 갖는 직업의 자유의 침해 여부가 우선하므로 행복추구권 관련 위헌 여부를 심사는 불필요하다.
- ③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에 대해서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허용하는 취지의 법령은 방송의 공익성을 위한 것으로서, 그 공익성이 방송광고 판매대행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보다 우월하다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④ 헌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뜻한다.
- ⑤ 건설기술자제도는 자격제도의 하나이고 입법자에게는 그 자격요건을 업무의 내용과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 관련 조항의 위헌성 심사는 입법자가 건설기술자의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살피면 족하다.

【문 6】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모든 사람은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 ②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 ④ 결혼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합의에 의하여만 성립된다.
- ⑤ 소유권은 불가침이고 신성한 권리로서 정당한 보상의 조건하에서가 아니면 박탈될 수 없다.

【문 7】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가. 현행법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피의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을 받는 단계에 있는 피의자가 제출하는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다. 상소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규정하면서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구금일수 통산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본형 산입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은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
- 라. 교도소 내 임종격리대상자에 대하여 이동시 계구를 사용하고 교도관이 동행계호하는 행위 및 1인 운동장을 사용하게 하는 처우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마. 금지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금지기간 중 운동을 금지하는 행정법 시행령 중 관련규정은 수형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① 가, 라, 마      ② 가, 다, 라      ③ 가, 나, 다, 마
- ④ 가, 다, 라, 마      ⑤ 다, 라, 마

【문 8】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그 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넓은 의미의 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진정입법부작위)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을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이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부진정입법부작위)가 있다.
- ②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③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는데도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불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정할 수 없다.

【문 9】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구속적부심사제도는 제헌헌법 당시에도 존재하였다.
- ② 구속적부심사의 청구인적격은 피의자는 물론 피고인도 가진다.
- ③ 입법자는 구속적부심사제도와 관련하여 관할 법원, 제소기간 등 일정한 절차요건을 설정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절차적 제한규정도 최소한의 합리성을 구비하여야만 헌법적으로 용인된다.
- ④ 유신헌법에서는 “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당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함으로써 법률에 의한 제한의 가능성을 넓게 인정하고 있었다.
- ⑤ 구속적부심사결정에 대해서는 검사나 청구인 모두 항고할 수 없다.

【문 10】‘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함)

- 가. 연명치료중인 환자의 자녀들은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
- 나. 행정사 자격시험 학원개원비용의 지출로 그 상당한 손해를 입었거나 행정사로서 명예가 손상되었다는 청구인은 제17대 국회가 행정사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사이에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다. 법인세 산출시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제13호의 규정에 대하여 기부의 주체가 아닌 기부의 상대방으로서 의료법상의 의료법인들은 위 규정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을 갖는다.
- 라. 춘천시 시민들은 강원도지사가 혁신도시입지로 원주시를 선정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
- 마. 국가의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행위는 당해 국립대학을 수급자로 하여 행해지는 것인지 사립대학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사립대학 경영주체인 학교법인에게 국가의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① 가, 라      ② 나, 라, 마      ③ 나, 다, 라
- ④ 라, 마      ⑤ 나, 라

【문 11】사법권(헌법재판권 포함)의 한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가.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긴급재정경제명령 사건(헌재 1996. 2. 29. 93헌마186)에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국가긴급권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 나. 대법원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시하였다.
- 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에 대해서도 그것이 행복추구권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 라. 국회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국회의원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회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마.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므로, 조약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① 라, 마      ② 다, 마      ③ 다, 라, 마
- ④ 가, 다, 라      ⑤ 가, 다, 라, 마

【문 12】다음 설명 중 모두 옳은 것은?

-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20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0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 ②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헌법에 299인으로 정하여져 있고, 임기는 4년이다.
-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각각 6년이다.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있고, 대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는데,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이고, 대법관의 정년은 65세이다.
-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이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판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사의 정년은 63세이다.
- ⑤ 감사원은 원장을 제외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각각 4년이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문13】 '지방자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의 임직원도 겸직할 수 없다.
- ②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 생긴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한한다.
- ⑤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의한 주민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주민의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14】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률해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수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 ②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단순히 법위반사실 자체를 공표하는 것일 뿐, 사회 내지 사파하라는 의미요소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양심의 자유의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③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시 준법서약서를 제출받도록 한 규정은 비록 수형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면 가석방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④ 인터넷 게시판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정당·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의견 등의 표현행위에 불과하여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아니한다.
- ⑤ 양심의 자유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할 자유까지 포함한다.

**【문15】 다음 '탄핵소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    |  |
|----|--|
| 가.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은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
| 나. |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 다. |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
| 라. |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
| 마. | 탄핵심판사건에 관하여 재판관 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 있다.   |

- ① 라, 마 ② 나, 다, 마 ③ 다 ④ 다, 라 ⑤ 다, 라, 마

**【문16】 명령·규칙의 위헌성에 대한 심사권에 관한 서술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근거하여 명령·규칙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그 효력 상실을 선언할 수 있다.
- ②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규칙'은 행정규칙을 당연히 포함하는 개념이다.
- ③ 헌법 제107조 제2항의 취지상 대통령령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는 해당 대통령령 조항에 대하여 위헌 제청신청을 하거나, 그 기각을 전제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④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 취지상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권은 배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⑤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은 다른 공권력행사에 대한 헌법소원과 달리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문17】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함)

-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②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로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하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④ 국가기관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인 개인정보를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 ⑤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등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수집 및 보존은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문18】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다음 지문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위 단서의 경우라 하더라도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③ 헌법재판소는 판결선고 전 구급일수의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판결선고 전 미결구급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었으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급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정을 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동종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 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리에 의하더라도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할 수 없다.
- ⑤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개선입법은 어느 경우에도 소급적용된다.

【문19】 다음 설명 중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 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가.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
- 나.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하는 행위
- 다. 엄중격리대상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행위
- 라. 구 국군보안사령부가 군과 관련된 첩보 수집, 특정한 군사범원 관할 범죄의 수사 등 법령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평소의 동향을 감시 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관행, 망원촬영, 탐문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하는 행위
- 마.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을 포함시키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의 규정

- ① 가, 나, 라                      ② 가, 나, 라, 마                      ③ 나, 다, 라
- ④ 가, 라, 마                      ⑤ 가, 다, 라

【문20】 사형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독일기본법은 사형 폐지를 선언하고 있다.
- ② 균형법상 상관살해죄에 대해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에 어긋나고, 형벌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 ③ 일본 헌법은 생명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 ④ 사형제도를 존치시킬 것인지 또는 폐지할 것인지의 문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가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 ⑤ 생명이 이념적으로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에 대한 법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문21】 우리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 ① 1948년 제헌헌법은 제1대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을 의결하고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었다.
- ② 1948년 제헌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4년 임기로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고, 국회는 임기 4년의 단원제를 채택하였다.
- ③ 1948년 제헌헌법은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진 헌법위원회와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탄핵재판소를 따로 설치하였다.
- ④ 1960년 6월 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재판소의 설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전허가 내지 검열의 금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제도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채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 ⑤ 1982년 제5차 개정헌법은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법원에 위헌법률심사권을 부여하였으며, 국회의원이 임기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였다.

【문22】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거주이전의 자유란 국민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소나 거소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전할 자유를 말하며, 그 자유에는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 이외에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가 포함된다.
- ② 거주이전의 자유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개성신장을 촉진시킴으로써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다른 기본권들의 실효성을 증대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 ③ 여권발급 신청인이 북한 고위직 출신의 탈북 인사로서 신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발급을 거부한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④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국적변경의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⑤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해 최초로 명문화한 헌법은 바이마르헌법이다.

【문23】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나 위원회의 의결절차가 위법하게 자신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나 위원회 또는 그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한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위 가결·선포행위가 자신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⑤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은 청구인의 권한침해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있어 국회의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문24】 입법절차와 관련한 서술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는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와 관련된 사실의 다툼이 있을 경우 국회 본회의 회의록의 기재내용 뿐만 아니라 목격자의 증언 등 관련 자료와 정황을 종합하여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국회의장이 국회의 위임 없이 의결된 법률안의 조문이나 자구·숫자,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 등을 정리하더라도 그러한 정리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한 헌법이나 국회법상의 입법절차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⑤ 입법절차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은 본질적으로 법률안의 심의·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다.

【문25】 다음 중 가장 옳바르지 않은 설명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범행 후 미국으로 도주하였다가 한국과 미국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체포되어 인도될 때까지 구금되어 있었다는 인도절차를 밟기 위한 기간에 불과하여 본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 없고,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의 효력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국내법규 위헌성에 대한 심사의 척도로 삼을 수 없다.
- ③ 우리헌법은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전속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조약을 체결·비준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 ④ 외교통상부장관이 2006. 1. 19.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발표한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조약이다.
- ⑤ 일본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때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문26】 조례제정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바르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
- ③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정이 불가능하다.
- ⑤ 조례안의 일부가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전체의 효력이 부인된다.

【문27】 학문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학문연구의 자료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존의 사상이나 가치체계와 저촉되더라도 그것이 이론적 영역을 넘어 사회적인 행동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한,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범주 내에 속한다.
- ② 헌법 제22조 제1항의 학문의 자유에는 개인의 인권으로서의 학문의 자유 뿐만 아니라 특히 대학에서 학문연구의 자유·연구활동의 자유·교수의 자유 등도 포함된다.
- ③ 교사의 교육을 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 보기 어렵다.
- ④ 의무교육 취학연령을 획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능력 있는 아동의 조기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시켜 줌으로써 인간다운 문화생활과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는 기능을 한다.

【문28】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과 다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② 집회신고는 신고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집회신고서의 반력행위는 신고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 ③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에게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사전허가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 ④ 각급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⑤ 집회의 자유의 행사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회피되기 어려운 일정한 교통의 방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

【문29】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이 없다.
- ②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서 대학에게 부여된 기본권이므로 교수나 교수회의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성이 부정된다.
- ③ 자본주의 경제질서 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 ④ 생명권은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형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이므로 태아에게도 그 주체성이 인정된다.
- ⑤ 인간으로 발전할 잠재성을 갖고 있는 초기배아에 대해 국가의 보호의무는 인정되나 그 기본권 주체성은 부인된다.

【문3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데,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및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이 계속 목적을 위한 경비의 경우에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③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임의로 설치할 수 있다.
- ④ 국회의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 ⑤ 국채를 모집하려는 경우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31】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서술 중 옳지 아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국회의원은 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헌법상의 국가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 여러 가지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 ②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을 선거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명령적 위임(또는 기속위임)이 아닌 자유위임의 원칙하에 두었다고 할 것이다.
- ③ 전국구 국회의원이 그를 공천한 정당을 탈당하였다고 하여도 별도의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아니한다.
- ④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을 바꾸는 것은 유권자인 국민이 선택한 정당별 의석분포를 변동시키는 행위로서 국민주권의 원리에서 나오는 국민의 '국회구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 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문32】 옳바른 설명만을 모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가.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과 그 기간점에 관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라고 정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와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침해금지를 보장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 나. 인지청구의 소의 제소기간을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로 제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다. 남계혈통 위주의 호주제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 라. 동성동본금혼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기본에 반한다.
- 마. 자의 성을 정함에 있어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라, 마    ③ 가, 다, 라, 마  
④ 나, 다, 라, 마    ⑤ 가, 나, 다, 마

【문33】 국회의 국정감사·국정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 ① 특정사안에 관한 국정조사는 국정전반에 관한 국정감사와 달리 비공개원칙이고,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②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한다.
- ③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범위는 국가의 위임사무나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다.
- ④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는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⑤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원칙적으로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감사를 행한다.

【문34】 다음 중 대법원의 단심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한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가 있어서 제소하는 경우
- 나. 주무부장관이 시·도의 장에 대하여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이행명령을 하고, 시·도의 장이 그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어 제소하는 경우
- 다. 감사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청구를 하는 경우
- 라.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였음에도 전과 같이 재의결되어 확정된 경우, 그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제소하는 경우
-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부장관의 재의요구를 받아 시·도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였음에도 전과 같이 재의결되어 확정된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제소하는 경우
- 바. 해양사고에 대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사.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중 군인·군무원의 범죄의 경우
- 아. 법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청구를 하는 경우

- ① 가, 나, 라, 마    ② 가, 나, 다, 라, 마, 바, 아  
③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④ 가, 나, 라, 마, 바, 사, 아  
⑤ 가, 나, 라, 마, 바, 아

**【문35】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과 다른 것은?**

- ①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은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유형으로서의 헌법상 권리이다.
- ② 변호사의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을 변호사의 내밀한 개인적 영역에 속하지 않으므로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변호사의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
- ③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에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 ④ 자신이 마실 물을 선택할 자유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의 내용을 이룬다.
- ⑤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기부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문36】 헌법 제27조 제5항에 의한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 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
- 나. 교통사고처리특별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
- 다. 헌법 제27조 제5항의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개념에 한정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향유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의 뜻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 라. 고소사건을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지 아니하고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공판 종결처분한 것은 현행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간이절차를 창설한 것이 되어 현행법이 명문으로 간이처리절차를 둔 취지를 몰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마. 당해 범죄의 고발인도 원칙적으로 그 범죄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자기의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심판청구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 ① 가, 나, 다, 마      ② 가, 나, 다      ③ 가, 나, 다, 라
- ④ 가, 다, 라, 마      ⑤ 나, 다

**【문37】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국민이 종전의 법률관계나 제도가 장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에 적용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 국가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권리의무에 관련된 법규·제도의 개폐에 있어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 ② 그러나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③ 한의사전문의제도 도입 이전 한의사 수련과정을 마친 한의사들이 한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하여 가졌던 신뢰나 기대는 일방적인 희망이나 기대에 불과하므로, 입법자가 한의사전문의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종전 수련과정 이수자에 대하여 기존 수련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④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⑤ 공무원 퇴직연금액의 조정기준을 '보수월액의 변동'으로 규정하던 것을 향후 특정 시점부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면서, 이를 기존의 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진정소급입법으로서 기존 연금수급자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문38】 국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국회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등 16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 ② 국회의원은 현행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24시간 이내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고,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 ④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있다.
- ⑤ 국회는 의원이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한편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한다.

**【문39】 다음 중 옳지 않은 내용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수사서류에 대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그 거부행위 자체로써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 ② 피고인이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③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군사법원에 부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군인의 재판청구권을 형성함에 있어 그 재량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 ④ 특별검사가 참고인에게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 동행명령을 받은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 ⑤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기간과 상소절차 진행기간을 일반사건보다 단축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문40】 국회 교섭단체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지 않고 의사일정을 변경한 것만으로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②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정당 소속 의원들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 ③ 상임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
-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 속한다.

## 【 민법 40문 】

【문 1】 일조권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판례에 의함)

-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 위법한 일조방해 행위로 인한 피해 부동산의 시세하락 등 재산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건물이 완성될 때에 일회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진행되나, 위법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등 생활환경이 악화됨으로써 피해건물의 거주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는 가해건물이 준속하는 한 날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므로 그 소멸시효도 가해건물이 준속하는 한 날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 ㉢ 분양회사가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그 아파트에서 일정한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없게 되더라도 분양회사가 신축한 아파트로 인하여 그 분양받은 아파트의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분양회사에게 일조방해를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 초등학교 학생들은 공공시설인 학교시설을 방학기간이나 휴일을 제외한 개학기간 중, 그것도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학교를 점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생활이익으로서의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 ㉤ 일조방해, 사생활 침해, 조망 침해, 시야 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과 같은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일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가 있더라도 생활이익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수인한도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인 생활이익별로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한 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이익들에 기초해서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문 2】 다음 중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매수인은 매매계약 사실만 주장·입증하면 되므로, 매수인이 이를 주장·입증한 경우에는 비록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매도인이 매매대금채권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상환이행판결이 아닌 전부 승소판결을 받게 된다.
- ② 매매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이 교부된 경우 매매대금채무의 이행과 약속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매대금 채무자는 변제가 도과하더라도 약속어음을 반환받지 않는 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매매목적 부동산에 지상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물론 그 지상권설정등기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 의무도 모두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④ 채무변제와 영수증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차용증 등 채권증서의 반환의무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은 후에 인정되는 것이지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 ⑤ 甲(최초 매도인)과 乙(중간 매수인), 乙과 丙(최종 매수인)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甲, 乙, 丙 3자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후에 甲과 乙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은 그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문 3】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경락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다 내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매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매각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익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 ② 임차권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이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담보하는 특약을 하지 않은 이상, 임차권 매매계약 당시 임대차 목적물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임차권 매매계약 이후에 실행되어 그 임대차 목적물에 제3자에게 매각(경락)됨으로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되거나 임대인이 무자력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사실상 이행할 수 없게 되더라도, 임차권 매도인은 민법 제576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부동산에 관한 수량지정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민법 제574조, 제572조에 의해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 미달부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이 일부 무효임을 이유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일부가 원시적 불능임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에 의해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 ④ 제조 당시부터 존재하던 차량 내부 배선의 결함으로 인해 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전소한 경우, 그로 인해 차량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 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다.
- ⑤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출재로 피담보채권을 변제함으로써 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소멸시킨 경우, 매수인은 그 저당권의 존재에 관한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민법 제576조 제2항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그 변제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제척기간의 제한도 없다.

【문 4】 다음 중 혼동(混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정의 물건에 관하여 채권을 가진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되면 그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므로, 乙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를 한 가등기권리자 甲이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원인에 의해 乙로부터 甲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甲의 乙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항상 혼동으로 소멸한다.
- ② 임차권은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면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 ③ B보험회사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甲이 동생인 乙을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甲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甲, 乙이 모두 사망함으로써 그 부(父)인 A가 甲, 乙의 단독상속인이 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므로 그 결과 A는 B보험회사에 대하여 피해자 乙이 갖는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 ④ 위의 사례에서 乙만 사망하고 甲이 乙의 단독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그 결과 乙의 B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직접청구권도 소멸하지 않으므로, 甲이 乙의 상속인 지위에서 B보험회사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근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근저당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거나 그 근저당권 이후에 후순위 권리자가 없는 한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후에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로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하고 이 때 등기부상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 근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승낙할 의무가 있다.

**【문 5】** 실종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상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달리 사망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 ②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룰 수는 없다.
- ③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실종선고가 이루어졌으나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된 경우, 실종선고된 자는 재산상속인이 될 수 없다.
- ④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 민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민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⑤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이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는 위 판결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에 해당하므로 무효가 된다.

**【문 6】**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
|--|--|
| <p>㉗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도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있다.</p> <p>㉘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p> <p>㉙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p> <p>㉚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p> <p>㉛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p> | <p>① 가, 나, 라                      ② 나, 라, 마                      ③ 가, 다, 마</p> <p>④ 가, 라, 마                      ⑤ 나, 다, 라</p> |
|--|--|

**【문 7】** 다음 중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그 후 당사자 일방이 간통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 도중에 이혼조정이 성립한 경우, 위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②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함이 원칙이나, 협의이혼 성립일 이후에 부부 일방이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거나 부부 일방의 채무가 변제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재산변동 사항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 ③ 혼인 중에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고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장래의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에 정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 ⑤ 부부 공동의 채무를 모두 남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 재판이 확정되더라도 그 채무 중 처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 남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문 8】**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차인이 주택의 명의신탁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록 그 명의신탁자에게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등기부상 주택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한 임대차임을 주장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소유자임을 내세워 그 주택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 (단, 명의신탁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함).
- ②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임대차보증금의 현실적인 수수 없이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되므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③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 임대인은 전부채권자에 대한 전부금지급의무(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 ④ 甲은 2009. 4. 1.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9. 5. 1.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를 마친 후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오다 위 주택을 乙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乙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고 乙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9. 8. 1.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乙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당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그 후 丙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甲이 거주하던 위 주택이 丁에게 매각(경락)된 경우, 甲은 丁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 ⑤ 甲이 乙로부터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乙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甲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주택이 丙에게 양도되면 甲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인해 丙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고 乙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

**【문 9】** 비전형담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권에서 위 법 제3조, 제4조에 정한 정산절차를 거쳤으나 그 청산금 평가액의 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청산금을 산정하여 새로 청산금 평가액 통지 및 청산기간을 거치지 않는 한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권에서 가등기담보권자가 위 법 제3조, 제4조에 정한 정산절차를 거쳤더라도 위 법 제6조 제1항에 정한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가등기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거부할 수 있다.
- ③ 기존의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그 채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이전하되 일정 기간 내에 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때에는 그 부동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위 약정 당시 부동산의 시가가 채무 원리금에 미달한 경우라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변제가 도래하면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
- ④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권에서 위 법 제3조, 제4조에 정한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이나, 그와 같은 본등기가 담보권 설정 당시의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의 특약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비록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본등기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의 목적 내에서는 유효하다.
- 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권에서 위 법 제3조, 제4조에 정한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후 위 법 제3조, 제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그 본등기는 실제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된다.

【문10】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든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 ②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
- ③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의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⑤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11】 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 ㉡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가 아니라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 ㉢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 ㉣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처럼 매수인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매도인에게 통지를 하면 제3자는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매도인의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아야만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 쌍방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미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매도인으로서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2】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약관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약관조항과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할 수 있고, 합의내용은 약관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②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에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
- ③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 중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도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④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약관에 관하여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보험약관을 명시·설명하면 충분하다.
- ⑤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문13】 다음 중 부양의무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②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부양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협정이 이루어지면, 당사자 사이에 다시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위 협정이 변경, 취소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는 그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③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부 중 일방은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 상대방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한 이후의 것은 물론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기 이전의 것도 부양받을 필요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부모 중 자녀를 양육하는 어느 한 쪽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제3자인 甲이 乙의 혼인의 출생자 丙을 양육 및 교유하면서 그 비용을 지출한 경우, 乙이 丙을 인지하거나 丙의 생모와 乙의 결혼으로 丙이 그 혼인중의 출생자로 간주되지 않는 한 乙에게 丙을 부양할 법률상 의무는 없으므로, 甲은 乙에게 그 비용을 부당이득반환이나 사무관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

【문14】 사용자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 ②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사용자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 ④ 지입차량의 차주 또는 그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지입회사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 ⑤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그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문15】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거나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그 처분행위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치고,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 ②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고 고장기간 행사고소를 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③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는 유효하게 된다.
- ④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
- ⑤ 갑이 을에게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2,000만 원의 차용을 부탁하면서 담보설정용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인감인장 등을 교부하였음에도 을이 수권의 범위를 넘어 위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병을 채무자로, 갑을 물상보증인으로 하고 그 피담보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000만 원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는 본인인 갑에게 그 효력을 미친다.

【문16】 다음 중 한정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속인 A(단독상속인)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서 상속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청산되어야 하므로, A가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던 자신의 고유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한정승인 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서 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② 피상속인 A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준 채권자 甲이 상속인 乙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채무(금전채무)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에서 乙이 그 제소 이전에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甲 전부 승소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판결확정 후에도 乙은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집행하고 자신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못하도록 집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상속인이 망인의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여 이를 망인의 장례비용으로 모두 지출한 경우, 그 장례비용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의 비용이라면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 위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증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그 ‘증대한 과실’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있다.
- ⑤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증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한정승인소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문17】 다음 중 중중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중중은 자연발생적인 중중집단체로서 그 성립을 위해 특별한 명칭의 사용이나 서면화된 중중규약의 존재 등의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최소한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어야 성립한다.
- ②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지파 소속 중중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중중도 가능하다.
- ③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년이 되면 남녀 성별의 구별 없이 당연히 중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현재의 관습법이다.
- ④ 중중의 대표자는 중중 규약에 대표권을 제한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중중총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중중을 대표하여 중중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 ⑤ 중중 명의로 중중 재산과 관련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중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문18】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
|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도 포함된다.                                  |
| ㉡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
| ㉢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  |
| ㉤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9】 다음 중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여러 명이 한 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그 일부씩 매수하고 편의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공유지분 이전등기로 한 경우, 매수인들 내부관계에서는 각각 특정매수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각 공유지분등기는 각자 특정 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등기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유효하다.
-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구분공유자 중 1명이 자신이 소유하는 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그 부분이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고 양수인이 그 필지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 구분공유자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해소된다.
- ③ 甲이 각 층이 물리적으로 구분된 1동의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중 1층은 A에게, 2층은 B에게, 3층은 C에게 각각 따로 매도하였으나 이를 집합건물로 구분등기하지 않고 1개의 건물로 등기하면서 A, B, C에게 건물 전체 면적 중 그들의 매수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쳐준 경우, A, B, C는 위 건물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 ④ 甲이 乙로부터 1필지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편의상 그 토지 전체에 관하여 매수지분 면적에 상응하는 비율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후에 乙이 위 공유관계의 해소에 불응하는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 ⑤ 甲, 乙 2명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甲이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에 관하여 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丙은 甲과 乙을 상대로 위 토지 부분에 관한 甲, 乙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문20】 공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라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할 수는 없다.
- ②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③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
- ④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당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
- ⑤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문21】 질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주권발생 전의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②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 ③ 채무자가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질권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무효일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 아닌 제3자가 그 무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
- ⑤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채권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문22】** 채무자 甲 소유 A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乙 소유 B 부동산에 관하여 丙이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후 丁은 A 부동산에, 戊는 B 부동산에 각각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 먼저 실행되어 丙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 丁은 B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고, 乙은 丙에게 B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A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 먼저 실행되어 丙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 그 피담보채권이 일부 남아 있더라도 丙은 B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의 행사를 주장할 수 없다.
- ③ B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 먼저 실행되어 丙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고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A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며, 戊는 그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 ④ B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 먼저 실행되어 丙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A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戊는 乙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A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B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 먼저 실행되어 丙이 매각대금 전액을 변제받았으나 그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 戊는 직접 A 부동산의 경매를 신청을 하기 위해 그 피담보채무 잔액을 변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甲의 의사에 반하여 그 채무 잔액을 대위변제하거나 변제공탁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문23】**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②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 ③ 건물의 보존등기는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어진다.
- ④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라 하더라도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 ⑤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등기를 마친 사람이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과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문24】**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
- ② 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③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④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 ⑤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문25】**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
- ②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반면 명의신탁자는 그가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므로, 명의신탁자는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③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고 이에 관한 공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④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영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 ⑤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문26】** 다음 중 친양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는 공동으로 15세 미만의 친양자 될 자에 대하여 친생부모의 동의와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을 얻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보고,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하나,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지 않는다.
- ③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사유로 인한 친양자입양취소나 친양자입양무효확인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양친이 친양자를 확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나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는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소급하여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문27】**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여계약은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그 공정성 여부를 논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 ② 증여는 무상계약이므로 증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증여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증여계약이 성립한 당시 서면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위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하더라도 그 이후로도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④ 증여의 이행 후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등 망은행위를 하면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고 수증자는 증여받은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⑤ 수증자가 범죄행위 등 망은행위를 한 경우 증여자에 대하여 해제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경우 법률관계 안정을 위하여 그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문28】** 다음 중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면서 건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26조 제2항에 의한 임대차계약상의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매각허가결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경락인)에 대하여 그와 별도로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유익비의 상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 ②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고, 점유자가 점유물을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③ 하천부지의 점유허가를 받은 甲이 그 하천부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乙을 상대로 직접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乙은 그 하천부지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더라도 갑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필요비나 유익비의 공제나 상계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甲을 상대로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 ④ 甲이 乙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乙로부터 丙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경우, 민법 제203조에 의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주체는 乙이고, 甲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물론 민법 제203조에 의한 유익비 상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 ⑤ 유익비 상환의 범위는 점유자가 사실상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가액 중 회복자가 선택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지므로, 유익비 상환의무자인 회복자의 선택권을 위하여 그 유익비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하여야 한다.

**【문29】** 계약 해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②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계약의 자동해제를 위하여 잔대금 지급기일에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 ③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뢰이익의 배상도 구할 수 있다.
- ④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제3자가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
- 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금전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문30】** 제척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가 가동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가동기의 원인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본동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원인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하더라도 적법하다.
- ②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일정한 중단사유가 있으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기간의 중단이란 있을 수 없다.
- ③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제척기간내에 제소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④ 매매계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⑤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은 주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3년이라는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문31】**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도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수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없다.
- ②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 ③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가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지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여전히 담보되는 것이다.
- ⑤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문32】** 신의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효적무효인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확정적 무효로 된 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③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고의로 개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면서도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 ④ 토지 위에 송전선이 통과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취득한 자는 송전선에 의해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고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송전선으로 인해 소유권이 제한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외에 송전선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⑤ 자신의 자(子)가 수십 년 동안 타인의 친자(親子)로 입적된 데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지내오다가 그 자(子)가 사망하자 자(子)가 남긴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위해 신분관계를 바로잡을 목적으로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문33】** 채무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채권자가 직접 채무인수에 대하여 인수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그 지급청구로써 묵시적으로 채무인수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가 일단 승낙을 거절하였다면, 그 이후에 채권자가 승낙을 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 ④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 ⑤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그 후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그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이는 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문34】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 전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乙 소유 대지에 관하여 甲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乙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甲이 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더라도 乙은 甲에 대하여 그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대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 ② 乙이 丙에게 유효하게 명의신탁한 토지에 관하여 甲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丙으로부터 乙에게로 이전된 경우, 甲은 乙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乙 소유의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甲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乙의 상속인 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 甲은 丙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만약 丁이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甲은 丁에게 취득시효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
- ④ 乙 소유 대지에 관하여 甲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乙이 그 대지를 丙에게 유효하게 명의신탁한 경우, 丙은 甲을 상대로 위 대지의 인도 및 지상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乙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甲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乙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甲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문35】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이므로 반드시 전원의 이름으로 하여야 한다.
- ② 대지를 매수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채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경락인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 ③ 여러 명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은 동일하게 균분하여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아파트의 공용부분은 다른 집합건물과는 달리 일부의 구분사용자들만의 공유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⑤ 집합건물법상의 특별승계인은 관리규약에 따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의무를 승계하는데, 특별승계인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고 보아야 한다.

【문36】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제651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다.
- ②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필요 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별도로 목적물보존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입증하여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④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 ⑤ 건물에 관하여 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문37】 다음 중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물품대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을 교부 받은 경우,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나, 반대로 어음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 ② 근저당권설정 약정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과 그 피담보채권(대여금채권)은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채권자가 처음에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후에 그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청구를 추가한 경우 비록 처음부터 대여금채권의 존부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투어져 그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대여금청구를 추가한 때부터 비로소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③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치고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채무자와의 약정에 따라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에 갈음하여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④ 소멸시효기간이 2009. 7. 1. 만료하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2009. 4. 1. 재판 외의 최고를 한 후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09. 8. 1.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가 그 소송 도중인 2010. 3. 1. 소를 취하하였으나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0. 4. 1.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 그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던 중 자신에게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음을 알고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권리를 양도받아 채권양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한 경우, 당초의 소제기는 권리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긴 하나 그 후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아 그 흠결을 보완한 이상 처음 소 제기한 날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문38】 다음 중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고 제3자로 하여금 유치물을 사용하게 한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은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나, 그 임대차보증금은 종국에는 임차인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이다.
- ② 송금의뢰인이 착오로 다른 수취인의 계좌에 예금을 송금한 경우에 송금의뢰인은 수취은행을 상대로 그 예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丙이 甲으로부터 횡령한 돈을 丙의 채권자 乙에 대한 채무변제에 전액 사용하였고 乙이 그와 같은 횡령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횡령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甲이 소유권유보부로 丙에게 건축자재를 매도하였으나 丙이 乙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이를 乙 소유 건물을 신축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그 건축자재가 건물에 부합되어 버린 경우 甲은 그 건축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한 乙의 약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 및 부합의 법리에 따라 건축자재 시가 상당액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甲이 乙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나 그 약정에 따라 돈을 대여한 경우에도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甲은 대여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받을 수 없고, 乙이 그 대여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甲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면 그 근저당권설정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乙도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문39】 다음 중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에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 ② 소유권 귀속원인으로 포괄적 유증을 주장하는 포괄수증자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피상속인의 포괄적 유증을 무시하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이는 수증자가 유증의무자를 상대로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③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에 의한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등기부상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춘 자가 아니므로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민법 제1014조에 의해 갖는 상속분상당가액 지급청구권도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⑤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경우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40】 다음 중 유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되,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 ② 유류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시가는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③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가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볼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 ④ A가 공동상속인 甲, B, C 2명의 자녀를 남기고 사망하면서 자신의 총 재산 6억 원 중 공동상속인 아닌 B, C에게 각각 4억 원, 1억 원을 유증한 경우에 甲은 C를 상대로 2,000만 원의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⑤ 유류분권리자가 소멸시효기간의 경과 이전에 사인증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수증자에게 수증자가 보관 중인 망인 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망인 소유의 현금 중 수증자가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구한 경우, 이러한 주장이나 청구 속에는 위 사인증거가 유효임을 전제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형법 40문 】

【문 1】 다음 중 목적범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허위진단서작성죄    ㉡ 도박개장죄    ㉢ 사문서위조죄
- ㉣ 무고죄            ㉤ 음행매개죄    ㉥ 명예훼손죄
- ㉦ 국기·국장모독죄    ㉧ 강제집행면탈죄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2】 다음 중 횡령죄에 관한 기술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판례에 의함)

- ㉠ 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원총회의 결의로 조합자산의 처분을 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총회의 결의사항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결의를 집행할 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와 같은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조합규약을 제정하였는데,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규약 및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함을 알면서도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위에서 보관중이던 조합자산을 처분하였다면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 ㉡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자의 지위는 부동산의 경우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요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당해 범죄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재판상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 ㉣ 회사의 대표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경우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횡령죄에 있어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면 회사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 ㉤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법상 납입가장치가 성립하는 이상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됨을 전제로 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 ① ㉠, ㉡, ㉢, ㉣, ㉤    ② ㉠, ㉡, ㉢, ㉣    ③ ㉠, ㉡, ㉣
- ④ ㉡, ㉣, ㉤            ⑤ ㉢, ㉣, ㉤

【문 3】 다음은 형법상의 집행유예에 관한 기술이다. 그 중 옳은 것만을 모두 모은 것은?(판례에 의함)

- ㉠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 ㉡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하여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자유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으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1개의 죄에 대하여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나머지 다른 죄에 대하여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다.
- ㉣ 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인 사실)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다만 그 결격사유가 집행유예 선고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각된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다.
-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를 범하여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다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 ① ㉡, ㉢, ㉣, ㉤    ② ㉠, ㉡, ㉣    ③ ㉠, ㉢, ㉤
- ④ ㉠, ㉣            ⑤ ㉡, ㉣

【문 4】 과실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뛰어가던 행인끼리 충돌하여 넘어지면서 순간적으로 막 출발하려는 버스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로 머리가 들어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버스운전사에게 피해자가 다른 행인과 부딪쳐 넘어지면서 동인의 머리가 위 버스 뒷바퀴에 들어 올 것까지 예견하여 사전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
- ② 담임교사가 학교방침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실청소를 시켜왔고 유리창을 청소할 때는 교실안쪽에서 닦을 수 있는 유리창만을 닦도록 지시하였는데도 유독 피해자만이 수업시간이 끝나자마자 배란다로 넘어 갔다가 밑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면 담임교사에게 그 사고에 대한 어떤 형사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③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 ④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직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녹색등화에 따라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초과하였더라도, 신호를 무시한 채 왼쪽도로에서 사거리 교차로로 가로 질러 진행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이 없다.
- ⑤ 고속도로의 노면이 결빙된 데다가 짙은 안개로 시계가 20m 정도 이내였다면 차량운전자는 제한시속에 관계없이 장애물 발견 즉시 제동정지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나, 운전자가 그러한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고속도로상에 정지중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당시에 피해차량 후방에 사고발생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다른 승객들처럼 대피하지 않고 피해차량 뒤 고속도로 노면에 들어와 있었다면, 운전자에게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문 5】 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하였다더라도 국가의 심판기능을 저해하거나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
- ④甲의 교사에 따라 乙이 甲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甲은 무고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 ⑤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한 경우라면 무고죄의 주체는 명의자를 대리한 자로 보아야 한다.

【문 6】 다음 형법상의 범죄 중 미수범을 별하는 규정을 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                |
|-----------------|----------------|
|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 ㉡ 제225조(공문서위조) |
| ㉢ 제257조(상해)     | ㉣ 제283조(협박)    |
| ㉤ 제319조(퇴거불응)   | ㉥ 제366조(재물손괴)  |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판례에 의함)

- ㉠ 동업관계에 있는 갑과 을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갑이 동업재산인 교회건물의 매각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갑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 ㉡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와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또한 부동산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조합장이 조합으로부터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하여 달라고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불법원인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를 뇌물로 전달하지 않고 타에 소비하였다고 해서 타인의 물건을 보관중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그 제3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그 제3자가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 ① ㉡, ㉣    ② ㉡    ③ ㉡, ㉣    ④ ㉡, ㉣    ⑤ ㉡, ㉣

【문 8】 위증죄에 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을 모두 모은 것은?(판례에 의함)

- ㉠ 소송비용확정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하여 진행될 때에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심문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도 없고 또 민사소송법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도 아니하여 선서를 하게 하고 증언을 시킬 수 없으므로,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않는다.
- ㉢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다.
- ㉤ 누구든지 자기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나, 증인으로 선서한 이상 진실대로 진술한다고 하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되고 그렇다고 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이 되므로,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이 부득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선서한 다음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① ㉠, ㉢    ② ㉡, ㉣    ③ ㉡, ㉣    ④ ㉠    ⑤ ㉢

【문 9】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은?(판례에 의함)

- ①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직무상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한하고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나 이러한 보조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할 것인바, 면의 호적계장이 정을 모른 면장의 결재를 받아 허위내용의 호적부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 ②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③ 어음, 수표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정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발행하고, 거래상대방을 속여 그 환인을 받거나 물품을 매수하였다면 위 발행인의 사기행위는 이로써 완성되는 것이고, 위 거래상대방이 그 어음, 수표를 타에 양도함으로써 전전유통되고 최종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부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최종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발행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
- ④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문10】 강간죄에 관한 기술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판례에 의함)

- ㉠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간음행위까지 착수해야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 ㉡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까지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 ㉢ 형법 제297조에서 강간죄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생학적 성인 성영색체의 구성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성선(性腺), 신체 외관, 심리적·정신적 성, 사회생활에서 수행하는 성역할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새벽 4시에 여자 혼자 있는 방문 앞에 가서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것 같은 기세로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창문에 걸터앉아 가까이 오면 뛰어내리겠다고 하는 데도 배란다를 통하여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한 경우, 피고인은 아직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강간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
- ㉤ 법률상의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되기도 한다.

- ① ㉠, ㉡, ㉢, ㉣, ㉤      ② ㉠, ㉡, ㉢, ㉤      ③ ㉡, ㉢, ㉤
- ④ ㉠, ㉣                      ⑤ ㉡, ㉣

【문11】 준강도죄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판례에 의함)

- ㉠ 형법 제335조에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이와 같은 준강도죄의 입법 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는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다.
- ㉡ 준강도는 절도 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피해자 측이 절도 범인을 추격하는 태세에 있는 경우 또는 범인이 일단 체포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신병의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체포된 상태를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 ㉢ 절도 범인을 체포하려는 피해자가 체포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서 발로 차며 진치 3개월의 누골골절상 등을 입힐 정도로 심한 폭력을 가해오자 범인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솥뚜껑을 들어 위 폭력을 막아내려다가 그 솥뚜껑에 스푼이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되었을 경우, 범인의 위 행위기 체포를 면탈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이상 위 행위는 준강도상해죄를 구성한다.
- ㉣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이 이를 예기할 수 있었는가를 가리지 않고 그 나머지 범인 역시 준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 절도 범인이 처음에는 흥기를 휴대하고 있지 않았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할 때 비로소 흥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특수강도죄의 준강도가 되며, 이 경우 행위의 주체인 절도의 태양에 따라 단순강도죄의 준강도가 된다고 할 것이 아니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⑤ ㉠, ㉣

【문12】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 등에 관한 기술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판례에 의함)

- ㉠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거인멸 등 죄는 위증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내지 징계작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위 범조문에서 말하는 ‘징계사건’이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私人)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 ㉡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라 하더라도 이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 ㉢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인이 될 사람을 도피하게 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 제155조의 증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 ㉣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부터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위 조항이 규정하는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은닉행위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 ① ㉠, ㉡, ㉢, ㉣, ㉤      ② ㉠, ㉡, ㉢, ㉤      ③ ㉠, ㉢, ㉤
- ④ ㉠, ㉡, ㉣                      ⑤ ㉡, ㉣, ㉤

【문13】 재물손괴죄 등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판례에 의함)

- ㉠ 밭에서 재배되었으나 미처 수확되지 않은 농작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명인방법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농작물을 매도한 사람이 매수인의 명인방법이 실시되기 전에 농작물을 파헤쳐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에도 해당한다.
- ㉢ 경락받은 공장건물에 시설되어 있는 자재가 경락에서 제외되어 있고 그것이 중진 건물소유자의 소유에 속할 경우 자재의 소유자가 이를 철거해 가지 않는다고 하여 그에게 철거를 최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철거하여 손괴한다면 재물손괴의 범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차용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은행에 보관시킨 약속어음을 은행지점장이 발행인의 부락을 받고 그 지급기일란의 일자를 지움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
- ㉤ 경리직원이 회사의 물품판매와 수금 등에 불가결한 회사소유의 매출계산서를 자기의 집으로 반출하여 은닉하면서 자기의 봉급인상 요구에 회사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의 매출계산서 반환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면 문서은닉죄에 해당한다.

- ① ㉠, ㉡, ㉢, ㉣, ㉤    ② ㉠, ㉡, ㉢, ㉤    ③ ㉡, ㉢, ㉣, ㉤  
 ④ ㉠, ㉡, ㉣    ⑤ ㉡, ㉢, ㉤

【문14】 다음 중 사기죄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은?(판례에 의함)

- ① 공사대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을 합산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은 경우, 임차인이 이에 기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자신의 소유라고 말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였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 명의신탁의 법리상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그 명의신탁 사실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말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③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④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 ⑤ 신용카드 가맹점주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신용카드회사에게 매출전표가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하였고, 신용카드회사는 매출전표에 기재된 바와 같은 가맹점의 용역의 제공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오신하여 그에게 그 대금 상당의 금원을 교부한 경우, 신용카드회사가 가맹점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허위 내용의 매출전표에 의한 대금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는 등 매출전표가 허위임을 알았다면 가맹점주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을 관계가 인정된다면, 가맹점주가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허위의 매출전표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신용카드회사에게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문15】 다음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판례에 의함)

- ㉠ 甲은 수사기관에서 자기에 대한 수 개의 절도죄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진범을 은폐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혐의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다.
- ㉡ 乙은 건축공사를 하면서 허위의 준공신고서, 준공검사 현장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였고, 이를 진실한 것으로 알고 받아들인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준공필증을 교부받았다.
- ㉢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丙은 금지물건인 담배를 교도관의 눈을 피하여 교도소 내로 반입하여 소지하였다.
- ㉣ 丁은 거래상대방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의제자백 판결을 받기 위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소장을 제출하여 소장이 그 주소로 송달되게 하였다.
- ㉤ 戊는 고등학교 입학원서를 제출하면서 추천서란의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고 허위로 기재하여 그 추천서 성적이 고등학교 입학 전형의 자료가 되게 하였다.

- ① ㉠, ㉡, ㉢, ㉣, ㉤    ② ㉠, ㉢, ㉣    ③ ㉢, ㉣, ㉤  
 ④ ㉡, ㉣    ⑤ ㉠

【문16】 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 ② 절도범이 갑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의 방안에서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무렵 그 집에 세들어 사는 을의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위 두 범죄는 그 범행장소와 물품의 관리자를 달리하고 있어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 ③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④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 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⑤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은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

【문17】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 ② 형을 중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중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 ④ 형법 제243조, 제244조에서 규정하는 “음란”은 평가적, 정서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이고, “음란”이란 개념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풀이되고 있으므로 이를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형법 제243조와 제244조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⑤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변조나 위조죄의 주체인 공무원 또는 공무원소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된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 할 수 없다.

【문18】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 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
- 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등록원부에 제3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④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도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
- ⑤ 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발급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은 피해자가 인도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명의대여자가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문19】 장물죄에 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을 모두 모은 것은?(판례에 의함)

- ㉠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 ㉡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고 그 예금계좌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자신의 예금좌를 중액시킴으로써 컴퓨터등사용자기죄의 범행을 저지른 다음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므로 장물이다.
- ㉢ 횡령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사죄 외에 장물취득죄도 성립된다.
- ㉣ 재물이 아니라 채권적 권리라고 하더라도 재산상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를 업무상의 과실로 취득하였으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된다.
- ㉤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① ㉡, ㉢, ㉤    ② ㉠, ㉡    ③ ㉡, ㉢    ④ ㉢, ㉤    ⑤ ㉠

【문20】 소송사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 ② 피고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 ③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그 진정성립 등에 관한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근처당권자의 대리인인 피고인이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경매개시결정정본을 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경매개시결정정본 등 서류의 수령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매개시결정정본을 교부받음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⑤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

【문21】 부작위범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판례에 의함)

- ㉠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 ㉡ 일정한 기간 내에 잘랐던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르게 된다.
- ㉢ 부작위범은 작위의무를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공동의 의사로써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경우에는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인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① ㉠, ㉡, ㉢, ㉣, ㉤    ② ㉠, ㉡, ㉣, ㉤    ③ ㉠, ㉢, ㉣, ㉤  
④ ㉡, ㉢, ㉣    ⑤ ㉡, ㉣, ㉤

【문22】 상해죄와 협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다음 강제추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폭행을 강제추행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할 수는 있다.
- ②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찌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을 가한 경우에는 중상해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으면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한다.
- ④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회포심을 느꼈더라도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적이 없다면 협박죄는 성립될 수 없다.
- 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문23】 형법상의 누범에 관한 기술로서 옳은 것을 모두 모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누범 가중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형의 단기에 관하여도 2배로 가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형의 선고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까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마저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행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가중이 가능하다.
- ㉢ 법정형 중 벌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 ㉣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이 되지 못한다.
- ㉤ 판결 선고후 누범이 발각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선고한 형의 집행을 이미 종료하였다면, 그와 같은 누범 발각을 이유로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없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⑤ ㉢, ㉣, ㉤

【문24】 배임죄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자신의 채권자와 부동산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로 전에 임의로 기존의 근저당권자인 제3자에게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로하여 준 경우, 그 지상권 설정이 새로운 채무부담행위에 기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근저당권자가 가지는 채권을 근저당권과 함께 담보하는 의미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로써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담보능력 감소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②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및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 거래처가 신규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상 정리하였더라도 금융기관이 실제로 위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게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 ③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를 위반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담보계약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주어진 권능이어서 자기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지 타인인 채무자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함에 있어 시기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는 담보계약상의 민사채무일 뿐 그와 같은 형법상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에 위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 ⑤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재물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데에 대한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문25】 공갈죄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을 모두 모은 것은?(판례에 의함)

- ㉠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협박행위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는 결국 공갈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후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여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 ㉡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 ㉢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해약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고지된 해약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해약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에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야 한다.
- ㉣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로 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로 되는 것은 아니다.
-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사용한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하였지만, 이는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지,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이라 하여 이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 ① ㉠, ㉡, ㉢, ㉣, ㉤      ② ㉠, ㉡, ㉢, ㉤      ③ ㉠, ㉣, ㉤
- ④ ㉡, ㉣, ㉤              ⑤ ㉢, ㉣

【문2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관한 진술로서 옳은 것을 모두 모은 것은?(판례에 의함)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어느 토지에 대하여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실제와 달리 '증여'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였다면, 비록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그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시킬 의사의 합치가 있더라도, 위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한다.
- ㉡ 피고인이 중중의 중원으로 중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데도 판시 토지들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위 중중 대표자인 것처럼 허위의 중중 규약과 회의록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위 토지들에 대하여 각 소유자를 중중으로 하고, 중중 대표자를 자기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로하였다면, 중중 대표자의 기재는 당해 부동산의 처분권한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의 기재로서 이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허위로 등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
- ㉢ 부동산에 관하여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 사이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일단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
- ㉤ 피고인이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와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단지 그 여자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하기로 한 것이라면, 피고인과 위 공소외인 사이에는 혼인의 체결에 관하여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는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그 혼인은 효력이 없고 그 혼인신고를 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한다.

- ① ㉠, ㉡, ㉢, ㉣, ㉤      ② ㉠, ㉡, ㉢, ㉤      ③ ㉠, ㉣, ㉤
- ④ ㉡, ㉣, ㉤              ⑤ ㉢, ㉣

【문27】 다음 중 불능미수 또는 중지미수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만을 모은 것은?(판례에 의함)

- ㉠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등으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로서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으로 소송비용의 청구방법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불능미수로 처벌하여야 한다.
-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자 피해자의 신체조건상 강간을 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보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의 경험상 강간행위를 수행함에 장애가 되는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범행을 중지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중지미수가 될 수 없다.
- ㉢ 피고인이 임야를 편취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 제기시 이미 소송의 상대방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해당 임야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칠 수 없으므로 이는 사기죄의 불능미수로 처벌하여야 한다.
- ㉣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에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는 중지미수라고 할 수 없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⑤ ㉠

【문28】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은?(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의 직무집행행지 가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는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비록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업무자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도급인의 공사계약 해제가 적법하고 수급인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수급인 소유의 공사자재 등을 다른 곳에 옮겨 놓은 행위는 수급인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③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문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는 가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를 포함하므로, 그 행위가 설사 동종업자 사이의 무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하였다면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이 된다.

【문29】 책임능력에 관한 기술로서 옳은 것을 모두 모은 것은? (판례에 의함)

- ㉠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도벽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 ㉡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 피고인이 당초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고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 ㉣ 형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심신장애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은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평소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라고 볼 수 없다.
- ㉤ 사춘기 이전의 소아들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소아기호증은 성적인 측면에서의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으로서, 이는 정신질환이므로 그 사정 자체로도 바로 형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심신장애로 보아야 한다.

- ① ㉠, ㉡, ㉢, ㉣, ㉤      ② ㉠, ㉡, ㉢, ㉣      ③ ㉠, ㉡, ㉣
- ④ ㉡, ㉢, ㉣              ⑤ ㉡, ㉣

【문30】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에 관한 기술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써 형법상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 ㉢ 법률상의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를 위하여는, 범인이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것으로 족하고, 더 나아가 법적으로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 ㉣ 자수한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혐의를 받고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도 자수로서의 효력이 없다.
- ㉤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 한다.

- ① ㉠, ㉡, ㉢, ㉣, ㉤      ② ㉠, ㉡, ㉢, ㉤      ③ ㉠, ㉢, ㉤
- ④ ㉡, ㉢, ㉤              ⑤ ㉠, ㉣

【문31】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직선거후보자 甲은 다른 후보자 乙이 연설 중 자신의 부친의 과거행적과 학력기제를 언급하면서 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자 물리력으로 연설을 중단시켰다면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② 작성권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할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회사측이 회사 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입게 한 상황에서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강제로 사문서를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내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④ 사용자 甲이 건물의 6층부터 9층까지를 사용하고 제3자 乙이 건물의 2층부터 5층까지 사용하면서 건물의 1층 로비부분은 甲과 乙이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경우에, 甲의 근로자들에 甲에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1층 로비부분을 침입·점거한 것이 사용자 甲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면 제3자 乙에 대하여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⑤ 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은 자기의 불륜행각을 폭로하겠다는 乙의 협박에 못이겨 회사 명의의 1,000만 원 짜리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었으나, 지급제시일 전에 분실한 수표라고 허위로 신고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문32】 피고인은 2005. 5. 3.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6. 3. 4. 만기 출소하여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10. 31. 갑죄(법정형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와 을죄(법정형 징역 2년 이하)를 범하였고, 양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피고인에게 법률상 감경사유는 없고, 작량감경 사유가 있어 감경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로 옳은 것은?

- ①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 ② 1년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 ③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 ④ 1년 이상 14년 이하의 징역형
- ⑤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

【문33】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판례에 의함)

- ㉠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이름·주민등록번호란에 글자를 오려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하는 한편 타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말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행위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부동산’은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인데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자신을 ‘○○부동산’의 대표라고 칭하며 계약서의 공인중개사란에 ‘○○부동산’의 상호와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자신을 대표자로 기재하여 마치 자신에게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대표자 자격이 있는 양 가장 하였다면, 이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 ㉢ 공문서변조라 함은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무원 또는 공무소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는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이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그 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문서의 작성일자 이전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실령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① ㉠, ㉡, ㉢, ㉣, ㉤    ② ㉠, ㉡, ㉣, ㉤    ③ ㉡, ㉢, ㉣, ㉤  
 ④ ㉠, ㉢, ㉣    ⑤ ㉡, ㉣

【문34】 불가법적 사후행위에 관한 기술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판례에 의함)

-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법적 사후행위가 되지 않는다.
-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납입받은 신주인수대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한 행위는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죄를 구성한다.
- ㉢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비록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공제한 나머지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는 위 토지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후 다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하면 이는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 ㉤ 대마취급자가 아닌 자가 절취한 대마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절도죄의 보호법익과는 다른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절도죄의 불가법적 사후행위로서 절도죄에 포괄흡수된다고 할 수 없고 절도죄 외에 다시 무허가대마소지죄를 구성한다.

- ① ㉠,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35】 다음은 甲의 행위를 기술한 것이다. 甲의 乙, 丙, 丁 3인에 대한 죄책에 관한 판단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甲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성형사출기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중 乙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성형사출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에 의하여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 후 丙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성형사출기를 다시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그때에도 역시 점유개정에 의하여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위 성형사출기를 丁에게 매각하고 대금을 받은 다음 이를 인도해 주었다. 위 매각시 甲은 丁에게 위 성형사출기가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음을 알리지 않고 자기 소유라고 말하였고 丁은 이에 따라 성형사출기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고 이를 매수하였다.

- ① 乙에 대한 관계에서 이중양도담보 제공행위는 배임죄이고 매각행위는 무죄, 丙에 대한 관계에서 무죄, 丁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
- ② 乙에 대한 관계에서 이중양도담보 제공행위는 배임죄이고 매각행위는 횡령죄, 丙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 丁에 대한 관계에서 무죄
- ③ 乙에 대한 관계에서 이중양도담보 제공행위는 무죄이고 매각행위는 배임죄, 丙에 대한 관계에서 무죄, 丁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
- ④ 乙에 대한 관계에서 이중양도담보 제공행위는 무죄이고 매각행위는 횡령죄, 丙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 丁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
- ⑤ 乙에 대한 관계에서 이중양도담보 제공행위는 무죄이고 매각행위는 배임죄, 丙에 대한 관계에서 무죄, 丁에 대한 관계에서 무죄

【문36】 친족상도례 등에 관한 기술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판례에 의함)

- ㉠ 직계혈족 등 형법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당시에 존재하여야 하지만,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
- ㉡ 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에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2항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조문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같은 조문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단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절도죄에 있어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 ㉣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등 사이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별범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위와 같이 사기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법 제328조 제1항을 준용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 ① ㉠,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문37】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어느 물건에 대하여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 이를 가져간 경우 나중에 그 권리 주장의 근거가 허위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일단 묵시적 동의를 한 이상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다.
- ㉡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할 목적으로 상대방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점에 손님들 가장하고 들어가서 도청장치를 설치하였다면 그 음식점의 영업주가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 ㉢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 ㉣ 의사가 정밀한 진단방법을 실시하지 않은 채 환자의 병명이 자궁외임신인 것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하고 환자인 피해자에게 자궁적출수술의 불가피성만을 설명하고 자궁외임신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자궁적출수술을 한 경우에는 위 승낙은 부정확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관한 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승낙으로 볼 수 없다.
- ㉤ 자기의 소유인 가옥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점유관리하고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서 그 가옥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 가옥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① ㉠, ㉡, ㉢, ㉣, ㉤      ② ㉠, ㉡, ㉢, ㉣      ③ ㉡, ㉢, ㉣, ㉤  
 ④ ㉠, ㉢, ㉤              ⑤ ㉢, ㉣, ㉤

【문38】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판례에 의함)

- ㉠ 뇌물죄에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으며, 뇌물죄가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는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 ㉡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 ㉢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알선수수죄의 구성요건 중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 ㉤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가 아니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⑤ ㉡

【문3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토지의 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같은 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다 하더라도,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거래당사자 사이에는 그 허가를 받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도인 갑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지를 제3자인 병에게 다시 매도하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면, 갑의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 ② 배임수증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 ③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그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그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적어도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나 손해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문40】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이 택시를 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사와 사이에 위 택시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택시는 그 등록명의자인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회사의 요구로 위 택시를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가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가져간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점유는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의 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권을 갖지 아니하는 절도범인의 점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 피고인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한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위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취거하여 간 경우 그 자동차는 위 회사 소유의 물건이지 피고인 개인 소유의 물건이 아니므로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피고인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에게로 옮겼다 하더라도 그것이 점유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었다면 설령 그 점유자의 의사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주식회사의 과점주주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 소유의 선박은 과점주주의 소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가 타인이 점유 중인 위 선박을 취거하여 갔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 ㉡, ㉢, ㉣, ㉤      ② ㉠, ㉡, ㉣, ㉤      ③ ㉠, ㉡, ㉣  
 ④ ㉠, ㉢, ㉤              ⑤ ㉡, ㉣, ㉤